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38호(號) 1935(昭和 10)년 3월 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14호(號)

1934(昭和 9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40호(號)(내선만대수소하물연대운송규칙[內鮮滿臺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3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조(條) 중 제11호(號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12 하카타항로(博多航路)란 기타규슈상선주식회사(北九州商船株式會社) 부산(釜山)·하카타(博多) 간(間) 항로(航路)를 말함.

제9조(條)제5호(號) 가 중(中) 단서(但書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함.

단(但), 성선(省線)과 북선(北線) 항로(航路), 하카타항로(博多航路)란 이것을 하나[一]의 운수기관(運輸機關)으로 간주(看做)함.

제15조(條)제2호(號) 중(中) 「여수항로(麗水航路)」를 「여수(麗水) 또는 하카타(博多) 항로(航路)」로 개정(改正)함.